##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 건59

제출년월일: 2016. 10. 20.

제 출 자: 박찬원의원외 5인

## 1. 제안이유

○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O 한옥의 등록 신청 및 결정 규정(안 제5조)
  - 한옥 소유자는 군수에게 등록 신청
  - 관계서류 검토, 현장 조사 실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
- O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 및 승계(안 제6조)
  -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로부터 5년간으로 함.
- O 등록 한옥의 해지(안 제7조)
  - 한옥 소유자 등이 군수에게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와 군수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
- O 등록 한옥의 건축 등 지원(안 제9조)
  - 건축 등의 보조금 지원근거 마련
  -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

-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(안 제10조)
  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
- O 한옥위원회 설치·운영 및 기능, 유사위원회 활용(안 제14조 및 제15조, 제16조)
  - 「평창군 건축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함.

### 3. 참고사항

- O 관계법령: 별첨
  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3조 및 제24조
  -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」제17조
- O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O 집행기관 의견수렴
  - 기간 : 2016. 10. 5 ~ 10. 12
  -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O 입법예고
  - 기간 : 2016. 10. 24 ~ 10. 31
  -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
# 평창군 한옥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평창군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한옥"이란 평창군에 소재하거나 건축되는 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 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의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.
  - 2. "등록 한옥"이란 한옥의 소유자 등이 일정 기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·멸실하지 않고 유지할 의향을 갖고 제5조에 따라 평창군수 (이하 "군수"라 한다)에게 등록한 한옥을 말한다.
  - 3. "한옥 건축"이란 건축물을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으로「건축법」제2조 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・증축・개축・재축(再築)하거나 이전 (이하 "건축 등"이라 한다)하는 것을 말한다.
  - 4. "한옥 소유자 등"이란 한옥의 소유권자 또는「건축법」제2조제12호 의 건축주를 말한다.
- 제3조(적용대상) 한옥 지원의 적용대상은 한옥 건축으로 한다.
- 제4조(책무) ① 군수는 전통 한옥의 보존과 건축을 권장하기 위하여 노력 해야 한다.
  - ② 한옥 소유자 등은 전통 한옥을 군수에게 등록하는 등 그 보존·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
#### 제2장 등록

- 제5조(신청 및 결정) ① 한옥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옥 소유자 등은 군수에 게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 한옥의 등록여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.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- 제6조(유효기간 및 승계) ① 등록 한옥의 유효기간(이하 "유효기간"이라 한다)은 등록한 날부터 5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제9조에 따라 한옥 건축비용을 보조금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으로 지원한 때에는 최종 지급일을 기산일 (起算日)로 한다.
  - ② 등록 한옥의 소유권이 변경된 때에는 유효기간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소유자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.
- 제7조(해지) ① 한옥 소유자 등은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그 등록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.
  - 1.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때
  - 2.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지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한옥의 등록을 해지해야 한다.
  - ③ 군수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각종 재해 · 재난 등으로 멸실된 때
  - 2. 보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수선한 때

- 제8조(대장) ① 군수는 등록 한옥의 유지상태 확인과 정책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하여 한옥 등록대장을 비치한다.
  - ② 제1항의 대장에는 등록 한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·관리해야 한다.
  - 1. 제5조제2항에 따라 등록 결정된 때
  - 2. 신축 등에 따라 등재의 필요성이 있는 때
  - 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

#### 제3장 지원사업

- 제9조(건축 등 지원) ① 군수는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건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보조금은 한옥 건축에 따른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.
- 제10조(지원신청 및 결정 등)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. 이 경우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  -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1년 내에 한옥 건축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착수해야 한다. 다만, 공사를 착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 - ④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해당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때에는 그 착수신고서 및 완료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.

- 제11조(지원시기) ① 군수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액을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해야 한다.
- 제12조(해지 및 환수)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결정을 해지할 수 있다.
  - 1. 제10조제3항의 기간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때
  - 2. 부득이한 사유 등에 따라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때
  - ②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람이 그 한옥을 임의로 철거 또는 멸실하는 등 원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지원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 또는 환수를 할 경우 그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「행정절차법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13조(세제감면) 군수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한옥소유자 등이 세제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
## 제4장 한옥위원회

- 제14조(설치·운영) 군수는 한옥 지원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창군 한옥위원회(이 조례에서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한다.
- 제15조(기능) 위원회는 한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.
  - 1.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선정
  - 2.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
  - 3.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
  - 4.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- 제16조(유사위원회 활용) ① 위원회의 기능은 「평창군 건축 조례」에 따른 평창군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한다.
  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의 위원정수에도 불구하고 한옥 건축분야 전문가, 기술자,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.

#### 제5장 보칙

제17조(준용)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제18조(시행규칙)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평창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제1항 중 "다른 법령에서"를 "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"로 한다.

## [별지 제1호 서식]

# 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비용발생 요인 : 등록 한옥 소유자등에게 건축 등 경비 지원

나. 관련조문 : 조례안 제9조(건축 등 지원)

### 2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○ 등록 한옥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건축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비용 발생

## 나. 추계 결과

○ 향후 5년간 비용 : 50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 방안

○ 지방세 : 500,000천원

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의회 박찬원의원
연락처	(033) 330 - 2501

## 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 구 분		1차년도 (2017년)	2차년도 (2018년)	3차년도 (2019년)	4차년도 (2020년)	5차년도 (2021년)	기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
세 입							
세 출		0	100,000	100,000	150,000	150,000	500,000
한옥 건축 비용 지원		0	100,000	100,000	150,000	150,000	500,000
재원 조달							
의 존 재 원	소 계						
	보조금						
	지방교부세						
자체 수입	소 계	0	100,000	100,000	150,000	150,000	500,000
	지방세	0	100,000	100,000	150,000	150,000	500,000
	세외수입						
	지방채						
기 금	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	
민간자본							
해외자본	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	

## 【관계법령】

- □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」
- 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,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.
  - ② 건축자산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자산을 보전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건축자산의 유지 및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24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 원이나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원 기준 및 범위와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옥마을이 새로 조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도로, 전기, 상수도·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·정비를 지원 할 수 있다.
  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한옥 및 한옥 마을에 대하여 「한국관광공사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관광공사가 같은 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우선 적용하거나 안내 및 홍보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.

## □「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- 제17조(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)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한옥마을은 일단 (一團)의 범위 안에 한옥이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야 한다.
  -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을 통한 기술자문 및 감독
  - 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사업비 보조 및 융자
  - 3.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